

의안번호	2220554
의 퇴 인	황정아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2.
추 계 번호	26F403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및
생산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임대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포함 － (현행) 임대용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→ (개정안) 임대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토큰을 생산하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경우 공제 적용	
2	안 제100조의35 (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생산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－ 공제내용: 생산비용의 20%를 법인세·소득세에서 공제 ※ 생산량 및 생산비용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30% －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0조의35(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임대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,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, 제100조의35 등)
 - 안 제24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경우 임대용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도록 공제대상을 확대
 -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임대용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대하여 임대용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
 - ※ (현행) 임대용 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 - (개정안) 임대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, 토큰을 생산하는 인공지능 팩토리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
 - 안 제100조의35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: 인공지능 팩토리가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 - 공제내용: 생산비용의 20%를 법인세·소득세에서 공제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30%
 - 적용기한: 2030.12.31.
 -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- 안 제24조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토큰 생산용 인공지능 팩토리 중 임대용 자산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될 임대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현재 투자 현황 및 기업의 향후 투자계획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공제 대상으로 포함될 투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료¹⁾에 따르면,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

터센터는 NHN Cloud가 운영하고 있는 ‘국가 AI 데이터센터’(광주), KT Cloud가 운영하고 있는 ‘경북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’(경북 예천) 등이 있음

- 이외에도 울산(SK텔레콤), 구미(삼성SDS) 등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향후 연도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 공제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

□ 안 제100조의35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·판매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공제대상인 생산량 및 생산비용 산정방식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향후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생산량과 생산비용의 산정방식 등의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하고 생산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

- 2023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은 7.4조원 규모²⁾로 집계되나, 해당 산업에서 특정 서비스의 공제대상 포함 여부와 생산비용의 산정방식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1)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“AI 데이터센터 동향과 시사점,” 2025.7.

2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“202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,” 2025.1.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